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714호
2. 발 의 자 : 이효원 의원 등 17명
3. 발의일자 : 2025. 5. 23.
4. 회부일자 : 2025. 5. 29.

II.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기구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어린이놀이기구 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행위의 제한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함(안 제5조제3호).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예고(2025. 6. 3. ~ 6. 7.)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이효원 의원 등 17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2714호로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제5조제3호는¹⁾ 교육장 및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가목에²⁾ 따라 유치원, 학교·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호가³⁾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

1)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제5조(행위의 제한) 교육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중 하나로 흡연·음주 등과 함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준하는 행위로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정하고 있는 출입 및 주정차 행위 제한 대상에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4) 따라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의되며, 주로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로 통칭되는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⁵⁾ 등을 의미합니다.

[그림-1] 개인형이동장치의 주요 유형⁶⁾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 한편, 최근 사회 전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판매업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나 공원 등에 방치되거나 주행 중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다만, 페달을 돌릴 때 자동으로 보조 동력만을 제공하는 파스(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속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음.

6) 법제처 찾기 쉬운 종합법률정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 전동킥보드 등이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06&ccfNo=1&cciNo=1&cnpClsNo=1> (검색일 2025-06-14)

- 서울시의회 역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9년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⁷⁾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 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 등을 가결하여⁸⁾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어린이놀이기구 내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 등을 관리 주체 등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적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더욱이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신이 관할하는 어린이놀이기구에서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 등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행 방식과 사용자 이용 양태 등에 있어 현행 조례 등이 출입과 주·정차를 제한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내용상 문제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 특히,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권을⁹⁾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에 관한 자치 법규에 반영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적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7) 서울특별시조례 제7165호, 2019. 5. 16., 제정·시행

8)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154호, 윤영희 의원 등 24명 발의, 2024.10.14. 발의)

→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4.12.20.) 의결 후 국회,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에 이송

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표-1] 어린이놀이기구 내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등 금지 규정 조례

조례명	행위제한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놀이기구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 제1882호, '23.11.3. 개정시행)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애완동물을 풀어 놓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등 방치 행위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개정 2023.11.3.> 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지원 조례(대구광역시 조례 제6289호, '25.5.20. 개정·시행)	제6조(어린이놀이기구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2.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4. 텐트, 그늘막 등 고정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각 호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6.4.).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	----------------	-------	----------------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의 내용, 지도·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79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중점점검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2.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3.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
4.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지도·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점검”이라 한다)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지도·점검을 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지도·점검의 일시
2. 지도·점검의 대상 및 점검항목
3.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